

2024년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위치정보법의 이해



사업자 대상 위치정보 보호 교육



목 차

1. 개요
2.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3. 위치정보법 위반사례



1. 개요

1-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등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정 목적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치정보법 제정 사유

- 동 법률은 "위치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위치정보의 산업적 이용보장의 조화"가 기본이념
-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감이 형성될 때 비로서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1-2. 위치정보법 주요 용어 및 법률적용 대상

“위치정보” 의 정의

- " 위치정보 " 란 ①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②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③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을 말한다.



해설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 휴대전화, 차량 등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한 시간: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시간대
-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과거 및 현재의 장소에 관한 정보
-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 통상적으로 GPS, Wi-Fi, 기지국, 비콘, NFC 등 측위 설비를 통해 생성·수집된 정보를 의미



※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가 아닌 눈으로 본 장소의 정보, 쇼핑몰 가입 시 입력한 주소정보 등은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1-2. 위치정보법 주요 용어 및 법률적용 대상

“개인위치정보”의 정의

➤ " 개인위치정보 "란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통상적으로 차량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물위치정보에 해당하나 배차일지 등을 통해 용이하게 결합하여 운전자(개인위치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

참고

➤ (결합가능성)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 (입수가능성) 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하여도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결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② 결합하는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이나 노력이 수반된다면 이는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1-2. 위치정보법 주요 용어 및 법률적용 대상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의 정의

- "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 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 제외)를 말한다.(법 제2조제4호)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의 정의

- "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 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 · 제공일시 및 이용 · 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를 말한다.(법제2조5호)



벌칙 규정

위반행위	벌칙	조항
○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 · 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4의2호



1-3.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위치정보사업의 정의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 단순히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회사 안에서 근태관리, 보안구역 감시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위치정보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위치정보법 해설서 참조)



위치정보사업자 유형

➤ 측위설비(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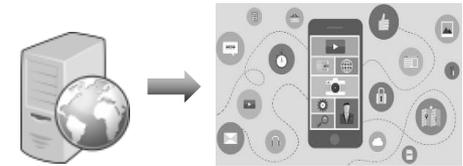
※ 와이파이(Wi-Fi), 비콘(Beacon) 등을 설치하여 각 기기의 장소별 신호DB를 구축한 후 이용자 단말기 수신 데이터를 통해 위치를 측위하며, GPS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자체로 위성신호를 수집하여 위치정보를 측위
(OS사업자(구글,애플), 이동통신사가 대표적인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



1-3.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정의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 내부의 근로감독 또는 관리 등의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위치정보법 해설서 참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유형

- 위치정보사업자가(OS사업자, 이동통신사 등) 측위한 위치정보를 앱 형태(앱개발시 위치정보 사용권한을 설정(Geo location API(구글), Core location API(애플)) 또는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통해 차량관제, 내비게이션 등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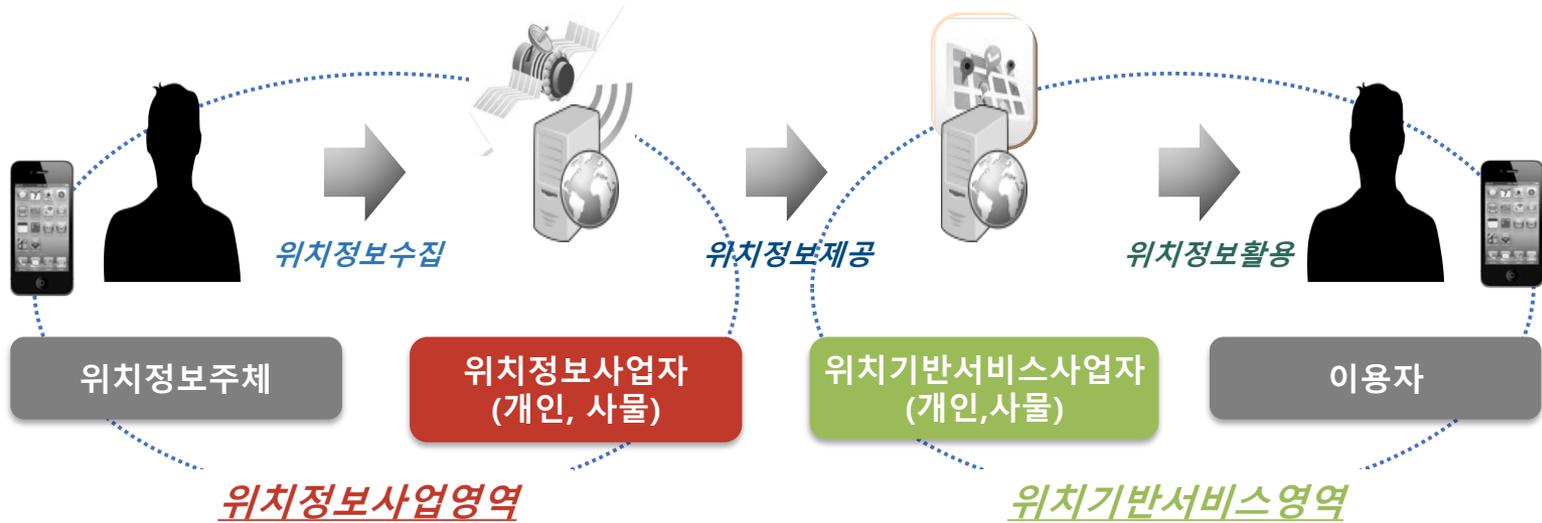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대상 여부는 [위치정보지원센터\(02-588-0185\)](http://www.kisa.go.kr)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1-3.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위치정보법상 사업자 유형

➤ 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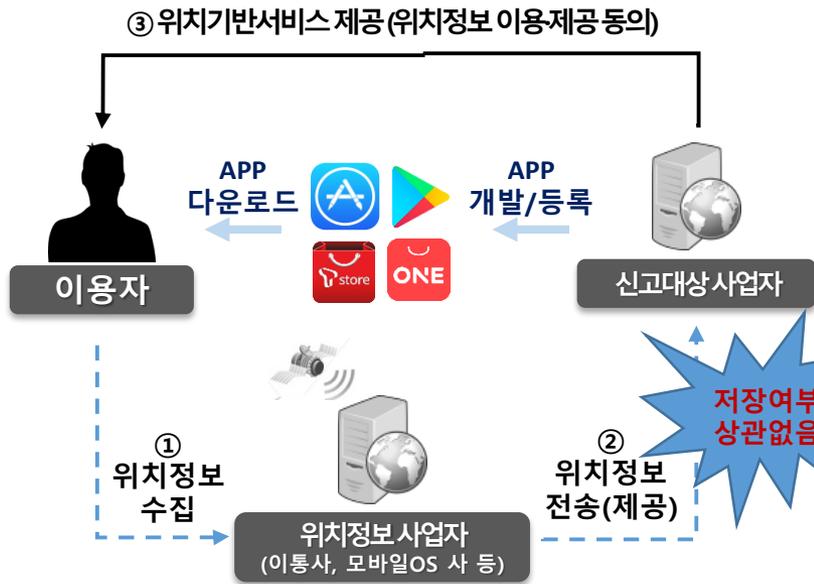
구분		행정절차
개인	위치정보사업	등록
사물		신고
개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사물		X



1-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비 신고 대상(예시)

위치정보사업 신고 VS 비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



<예시>

---> 위치정보 트래픽 →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절차

예) 이용자 위치정보를 신고사업자 DB(지도 등)와 가공·처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 비신고 대상 >



<예시>

---> 위치정보 트래픽 →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절차

예) 단말기로 수집된 위치정보를 사업자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단말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



1-5. 개인위치정보사업 관련 행정절차

개인위치정보사업 관련 행정절차



방송통신위원회



1-6. 개인위치정보사업 관련 주요 벌칙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사업의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을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1호
변경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을 한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호
양수 및 합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수하거나 합병·분할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1항 제2호
이용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3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이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7의2호
휴지·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지·폐지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받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천만원이하 과태료	제43조 제1항 제3호
상호, 소재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3항 제1호



1-7. 사물위치정보사업 관련 행정절차

사물위치정보사업 관련 행정절차



사업의 영위

신고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신고



상호,
사무소 소재지,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 등
위치정보
시스템 변경

신고



위치정보사업이
용약관
(서비스내용,
요금 등)

공개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공개



휴지·폐지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1-8.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행정절차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행정절차



※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



1-9. 사물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 관련 주요 벌칙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사업의 영위	○(사물위치정보)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0조 제1의2호
	○(위치기반)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제40조 제2호
양수 및 합병	○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합병분할 신고를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1호
이용약관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약관의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3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이하 과태료	제43조 제2항 제7의2호
휴지·폐지	○ 휴지·폐지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2호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신고를 아니한 자	1천만원이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2호
위치정보시스 템 변경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신고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1조 제1호
상호,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호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43조 제3항제1호



2.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의무사항



2-1. 의무사항에 대한 요약 장표

위치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



파기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자)

- 파기(제23조)



수집

(개인위치정보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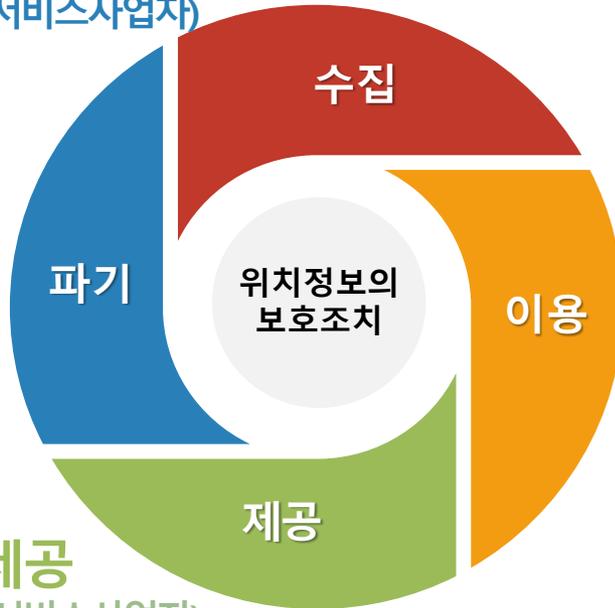
- 등록(제5조)
- 약관 공개(제12조제1항)
-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제21조의2)
- 약관 동의(제18조제1항)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24조)



수집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신고(제5조의2)
- 약관 공개(제12조제1항)
-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제21조의2)



제공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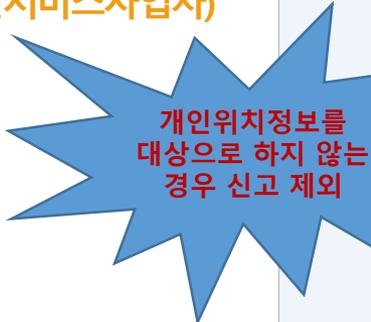
- 제3자 제공 동의(제19조제2항)
- 사후통지(제19조제3항)



이용

(소상공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신고(제9조, 제9조의2)
- 약관 공개(제12조제1항)
- 약관 동의(제19조제1항)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24조)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제외



2-2. 이용약관의 공개

이용약관의 공개(제12조)

- (대상)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포함)
- (공개방법) 사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개
- (이용약관 변경) 이용약관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글자 크기, 색상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벌칙 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이용약관의 공개	○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 제2항제3호



2-3. 이용약관 필수 규정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 대상)

- (법 제12조제1항) 서비스의 내용,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 (법 제18조제1항 각호)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시행령 제22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법 제12조제1항) 서비스의 내용,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 (법 제19조제1항 각호)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4의2.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 (시행령 제23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2-4. 이용약관의 공개 및 동의 방법(예시)

▼ 이용약관의 공개 예시

←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안)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회사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덴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등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일 기간)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

▼ 이용약관의 동의 예시(연결 화면)

←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필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본 약관입니다.

[상세보기](#)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길안내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합니다.

[상세보기](#)

연령(14세 이상) 확인 필수
위치기반 서비스로 14세 이상 이용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의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해 주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세보기](#)

내비 서비스 모두동의
전체 동의는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 동의하고 계속 진행

← 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안)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회사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덴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등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일 기간)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표준 이용약관 다운로드 : 위치정보지원센터(www.lbsc.kr) 접속
→ 자료 및 서식(등록/신고 서식 자료실) → 참고용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



2-5.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시 동의(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2항)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위치정보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 획득
- ※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ex: 친구 찾기, 안심 알림 서비스)의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팝업창 등을 통해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함

벌칙 규정

구분	위반행위	벌칙	조항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 이용 시 동의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意的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및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제3호



2-6. 이용약관 및 동의 FAQ

(Q) (겸업사업자의 이용약관 운영) 개인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A)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함**

(Q)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만 위치정보주체와 접점이 있을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

(A) 개인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주체의 접점이 없어 현실적으로 동의를 얻기 힘든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를 대신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달 가능

(Q)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약관 형태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A) 개인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각호, 제19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동의를 얻어야 함.



2-7. 사후 통보

사후통보 대상 및 방법(강행규정)[제19조3항]

- (대상)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ex: 친구 찾기, 안심 알림 서비스 등)
- (통보내용)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목적
- (통보방법) 해당 통신단말기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특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즉시 통보
- (벌칙규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통보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아통보(임의규정)[제19조4항]

- (절차)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즉시 통보 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
- (제한기간) 최대 30일
- (통보방법) 즉시통보와 동일



2-8.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 (법 제8조제4항, 제11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사업의 전부 또는 폐업**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하고, **휴업**의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법 제23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외의 개인위치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 후 즉시 파기** 하여야 함
- (법 제24조제4항)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여야 함

벌칙 규정

- (법 제40조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1조제2호)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43조제2항제8의2호)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43조제2항제8의3호)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9.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공개

- (법 제21조의2)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
 6.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벌칙 규정

- (법 제43조제2항 제7의2호) 제21조의2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10.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

제정 사유

-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자기 정보통제권의 실현은 사전적인 장치(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권)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후적인 장치 마련

정보주체의 권리

- 동의 철회, 열람·고지 및 정정 요구권, 일시중지 요구권

일시정지요구권

- **(입법취지)**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와 달리 시의를 전제로 동태적 성격을 지니므로 이용자는 시간·대상 등을 한정하여 일시적인 동의유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내용)**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함**
- **(벌칙규정)** 제24조제2항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일시적인 이용 중지요구를 거절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갖추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11. 법정대리인의 권리

입법 취지

- ▶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가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들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개정 2018. 12. 24)**

< 위치정보법상 연령별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및 철회 동의 규정 >

구분	수집·이용 동의	동의 철회	관련 조문
8세 이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제26조
8세 초과 14세 미만	본인 + 법정대리인	본인 + 법정대리인	제25조

벌칙규정

- ▶ 14세 미만의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법 제43조제2항 제10호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12. 법정대리인의 권리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방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동의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또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동의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동의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3. 위치정보 오·남용 및 법규 위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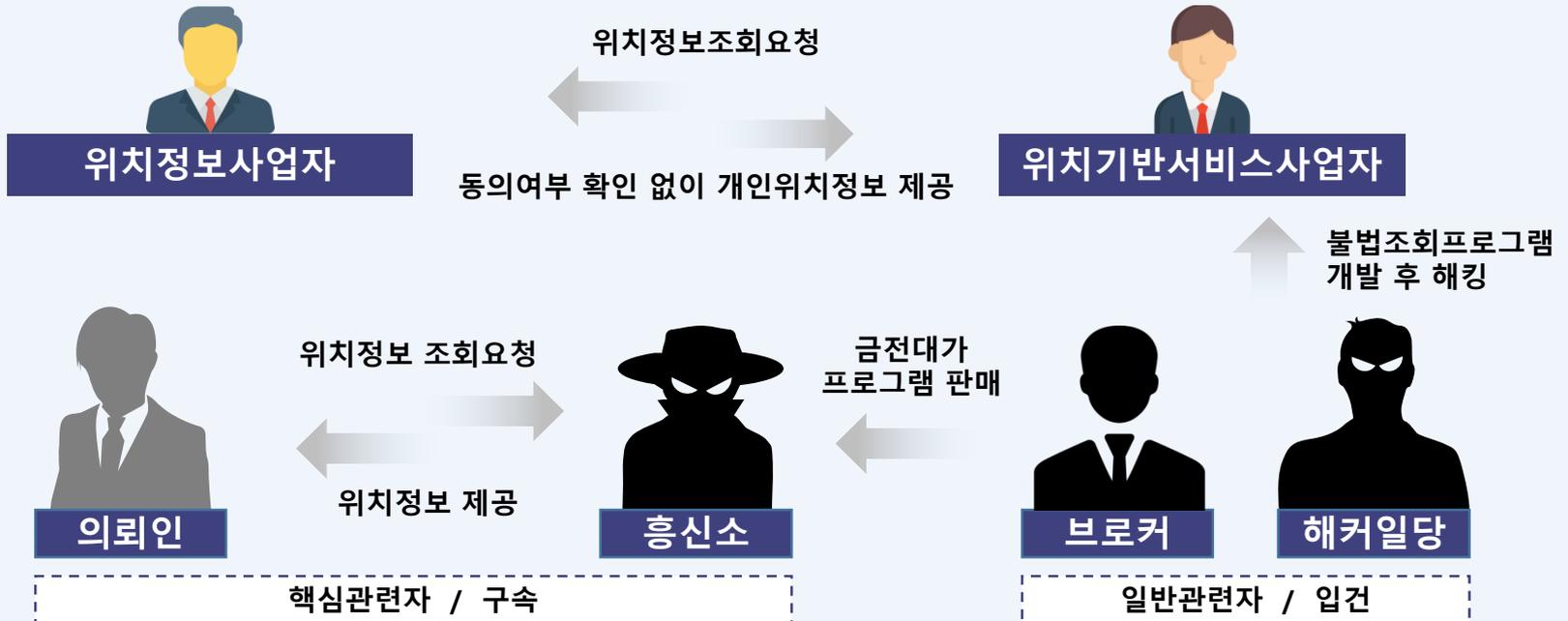


3. 위치정보법 위반사례

(협력업체 등) 협력업체의 프로그래머, 해킹 용의자, 심부름센터 등은 정보통신망법 동의 받은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 등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 송치

(통신사)

-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위치정보법 제21조 위반
-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위반





3. 위치정보법 위반사례

임직원의 위치정보 수집

뉴데일리경제

방통위, 90개 채팅앱 사업자 '위치정보법 위반' 수사 의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기사입력 2021-05-12 14:41:56 | 최종수정 2021-05-12 14:42:40 | 신뢰감 기자 | kpen84@newdailybiz.co.kr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회 등에서는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없이 운영한다는 지적이 빚발쳤다.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 2제 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 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뢰감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2/2021051200141.html>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12/2021051200141.html>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3. 위치정보법 위반사례

구글 · 애플(2011년 8월)

- (배경) ① 자사의 OS를 탑재한 휴대단말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면서 암호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② 설정에서 위치서비스가 "끔" 상태로 되어 있을 때에도 위치정보 캐시에 주변의 기지국 및 Wi-Fi AP 값을 업데이트 하는 등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
- (위반사항) ①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의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②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 위반

국내 某 자동차 2개사(2019년 6월)

-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위반)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이용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용약관을 동의받음
- (위치정보법 제24조제2항 위반) 네비게이션에 교통상황을 표시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한 경우에 대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3. 위치정보법 위반사례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를 점검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으로 총353건에 과태료 등 부과

※ 주요위반 유형은 휴폐업, 승인, 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

< 점검항목 및 사업자별 위반건수 >

점검항목	개인위치 정보사업자	사물위치 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 비스사업자	계
1.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여부	15	2	25	42
2.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신고 여부			1	1
3. 양수·양도 및 합병·분할 인가신고 여부	3		3	6
4. 휴·폐업 승인·신고 여부	23	1	126	150
5. 이용약관 공개 여부	9	1	6	16
6. 이용약관 명시항목 포함 여부	28		17	45
7. 이용약관 변경내용 공개 여부	2		1	3
8.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여부	10		14	24
9. 실태점검 자료 제출 미협조			6	6
10.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여부	23	3	28	54
11.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여부	4		2	6
계	117	7	229	353

감사합니다